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 탄생에서 소멸까지



글. 박진우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는 1881년 7월 29일자로 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du 29 juillet 1881)>에 근거를 둔다. 이 법은 제정 이래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언론 자유의 원칙, 더불어 언론 자유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예컨대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률적 규정, 반론권 및 정정권 등)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다.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법에는 제23조, 제26조, 제36조, 그리고 제37조를 통해 특정 개인, 공무원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독 등에 관한 다수의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런데 2013년 가을, 프랑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에 띄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 다름 아니라, 오랫동안 법률 속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사문화되어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그것은 지난 2008년 프랑스의 한 지방의원과 당시 대통령 사이에 벌어졌던 ‘대통령 모독죄’ 적용을 둘러싼 국내 및 유럽재판소 차원의 공방의 결과물이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를 우선 간략히 살펴보고, 뒤이어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폐지와 결합되어 있는 몇 가지 쟁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꺼져, 병신아!(Casse-toi, pauv' con!)” : 사르코지-에온 사건의 전후 맥락

국내의 언론에 단편적으로 전해진 것과는 달리, 이 구절은 약간의 ‘연원’을 가진 정치적 표현이다. 이 말을 처음 내뱉은 사람은 다름 아닌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전(前) 대통령이다. 2008년 2월 23일, 파리에서 연례적으로 열리는 농업 박람회(Salon de l'agriculture)를 방문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행사장에 운집한 농민들 속을 걸으면서 악수를 하였다. 그런데 한 농부가 대통령의 악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는 “아, 싫어, 나 건드리지 마, 내 손 더러워져(Ah non, touche-moi pas! Tu me salis!)”라고 말했다. 그러자 돌아서는 대통령의 입에서 “그래, 꺼져, 병신아(Casse-toi, pauv' con!)”라는 말이 불현듯 새어나왔다. 문제는 이 발언 장면이 주변에 있던 일간지 <르 파리 지앵>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겼고, 동영상 자체가 인터넷 공간에 퍼져나갔다는 점이다. 다음날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나아가 멀리 CNN의 뉴스에서도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뒤이어 일간지 <르몽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 11월에도 작은 항구도시인 길비백(Guilvinec)에서 있었던 어부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러한 발언을 하였던 적이 있다고 폭로하여,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당시 여당이던 UMP의 대변인은 이 사건이 “국가원수에게 린치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다고 해명하였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의 비판에서 비켜나기는 힘들었다.¹⁾



프랑스의 한 농부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르 파리지앵>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출처 : Sudouest, 「L'imposeur du "casse-toi pov'con" de Sarkozy de retour?」, 2011년 2월 15일자)

1) Laurent Merlet, “L’offens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ivres hebdo, n° 760, 16 janvier 2009, p. 70.

그해 8월 28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북부의 공업도시 라발(Laval)을 방문하였다. 그날 이 지역의 진보정당 소속 지방의원인 에르베 에온(Hervé Eon)은 “꺼져, 병신아!”라는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있었다. 에온 의원은 당시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이 표현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어쨌든 대통령 개인에게 충분히 ‘노이로제’를 일으킬 법한 이 일에 대하여 정부 측은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오랜 국가원수 모독죄 규정이 다시금 동원되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23일에 열린 1심 법정에서 에온 의원에게 벌금 1천 유로가 구형되었고, 11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벌금 30유로(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09년 2월, 에온 의원과 소속 진보정당이 공동으로 항소에 나서면서



지방의원 에르베 에온이 “Casse-toi, pauvre con”라는 글귀가 쓰여진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출처 : 1001actus, 「30 euros d’amende avec sursis, pour avoir offensé Sarkozy», 2009년 3월 25일자)

이 사안은 유럽재판소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재판소는 2013년 4월 이 조항이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수용하여 프랑스 국내에서도 2013년 8월에 이 조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전말 속에서 이제부터 쟁점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법을 포함한 프랑스 언론법제 속의 명예훼손 및 공직자 모독 관련 언론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가원수 모독죄를 둘러싼 구체적인 규정과 그 ‘정치적’ 맥락을 검토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재판소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원수 모독죄가 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다.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 역사와 맥락

넓은 틀에서 보자면,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는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특히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규정들의 맥락 속에 위치한다. 1881년 언론법은 언론 자유의 광범위한 보장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 조항들을 함께 규정하였다. 명예훼손, 중상(中傷), 모독, 허위 정보의 전달, 전달이 금지된 정보의 전달, 표명이 금지된 의견의 표명이라는 6가지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²⁾

그중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는 언론법 제26조 및 제36조에 규정된 ‘모독’ 관련 조항 속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프랑스의 대통령, 외국의 국가원수(및 행정 수반), 외국 정부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모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지 형사 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모독죄에 대해서 법정은 법률 제26조에 의거, 3개월간의 징역, 혹은 300프랑에서 30만 프랑 사이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92년 12월 16일자 법률(loi du 16 décembre 1992)에 의해 이중 처벌 조항이 폐지되었고, 2000년 6월 15일자 법률(loi du 15 juin 2000)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졌다. 따라서 2000년 이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는 공식적으로 벌금형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³⁾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가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2013년 8월 5일자 법률에 따라 이 벌금형 조항이 마침내 사라졌다는 뜻이다.

1881년 언론법의 이 조항은 원래 프랑스와 외국 정부 사이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의 유지를 언론이 고의적으로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주요한 적용 대상은 자국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 정부나 외국의 국가원수들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모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언론사의 정치적 비판과 모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모독을 여타의 명예훼손이나 중상(Injure)과는 어떻게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당대부터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국 정부 및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의 적용은(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와는 달리) 프랑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 조항이 폐지되었던 2004년까지 심심찮게 꾸준히 이루어진 바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1984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프랑스 방문 당시 과도한 성적 표현을 담은 <르몽드>의 만평(漫評), 2000년 아프리카의 독재자들과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은밀한 지원을 고발한 어느 시민운동가의 저서, 그리고 2001년 가을 프랑스를 방문한 모로코의 하산 2세 국왕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르몽드>의 만평에 대한 적용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 정치,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프랑스의 국가원수에 대하여 1881년 언론법 조항은 “국가원수로서의 공식적인 활동뿐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여기에는 대통령 선출 이전 시기의 일도 포함된다)에 대한 공격, 경

2) 6가지 조항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박진우,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58~63쪽을 참조.

3) 더불어 2000년 9월 19일자 행정명령(ordonnance du 19 septembre 2000)에 의해 벌금의 상한선이 45,000유로로 변경되었다. 이는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화폐단위 전환을 위한 것이다. 벌금액 상한선 규모 자체는 동일하다.

멸 혹은 일체의 명예훼손적 중상의 표현”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부가조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그것이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문서 상의 것,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해진 구두 발언 모두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하며, 아울러 그림(테생) 또는 합성사진(photomontage)도 포함된다. 더불어 그러한 표현의 맥락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항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든 아니면 그저 역사적인 차원의 비판이든지 무관하게, 표현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⁴⁾

이렇듯 명시적으로 자국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대단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둘러싼 실제 집행의 역사 그리고 판례는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조항이 가장 광범위하게 또 자주 적용되었던 시기는 드골 대통령 시절(1958~1969 재임)이다. 그는 임기 중 약 5백여 차례 이 조항을 적용해 비판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프랑스 헌정사상 이 조항을 가장 ‘긴요하게’ 써먹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 모독죄를 둘러싼 다수의 판례가 산출되었던 것도 대부분 이 시기이다.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비판은 드골 치하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우선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형법상 구성하기 대단히 어렵고 또 모호한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프랑스 시민들에게 지나치게 구체제 왕정하의 ‘불경죄(crime de lèse-majesté)’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하루빨리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드골 대통령의 취임과 프랑스 제5공화국의 출범이 알제리 내전이나 수에즈운하 위기와 같은 정치적 위기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권의 기반이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드골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측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었다. 드골 대통령 재임 기간 이전이나 이후나, 정부 스스로 이 법률의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약하였다는 경험 또한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2008년 프랑스 상원에 제출된 보고로는 1881년 법률의 제정 이후 1945년까지 약 60년 동안 이 조항은 실제로 단 6차례 적용되었을 뿐이다.⁵⁾

드골 대통령을 뒤이어 취임한 조르주 폼피두(Georges Pompidou, 1969~1975 재임) 대통령은 임기 중 단 한 차례 이 조항을 적용하였을 뿐이다. 뒤이어 취임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1975~1981 재임), 프랑소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재임), 그리고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1995~2007 재임) 대통령 모두 공식적으로 이 조항을 더는 적

4) a, b et c Article 26 de la loi n°1881-07-29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5) Jean-Luc Mélenchon,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broger le délit d'offens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broger le délit d'offens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ésentée par Jean-Luc Mélenchon, Annexe au procès-verbal de la séance du 19 novembre 2008.

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를 다시금 끄집어내기까지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유럽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인권협약 : 국가원수 모독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사르코지-에온 사건은 이처럼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해결되지는 않았던 국가원수 모독죄 관련 사회적 논쟁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려냄으로써, 결정적으로 이 조항의 폐지라는 ‘역사적 진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유럽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국제인권협약에 비추어 본 법적 정당성 구성요건 문제는 여기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1953년에 제정된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européenne)의 제10조 2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바로 협약으로 보호받는 수많은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약에 대하여 법적인 정당성이 요구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프랑스 정부는 오랫동안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수많은 규정을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협약 위반이라는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 예컨대 국가가 안보상의 이유로 통신 사업자들에게 일부 시민들의 통화 내역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협약 제8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1990년 판결이 대표적이다.⁶⁾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앞서 언급한 대로 1881년 법률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2006년에 있었던 유럽사법재판소(유럽인권법정, CEDH)의 판례에서도 재확인하였듯이, 이 법률은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춘 사법적 근거에 해당한다.⁷⁾ 하지만 이 같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적 정당성 요건 충족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해당 법은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언론법은 법적으로 더욱 명료하게 정의된 ‘위반’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1995년 11월 22일자 판결에 따르면, 이 법률은 어떤 행위 혹은 행위의 결여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정당한 요건을 명료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⁸⁾ 1881년 언론법 제29조 1항에서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개인 혹은 법인을 비난함으로써 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과 비난”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것과, 또 제29조 2항에서 “모욕적인 표현,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용어, 또 그것이 식별 가능한 대상을 향하는 경우”가 ‘중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모독’의 구체적인 명시가 이 법

6) CEDH, 24 avril 1990, *Kruslin c/ France*.

7) CEDH, 7 novembre 2006, *MAMERE c/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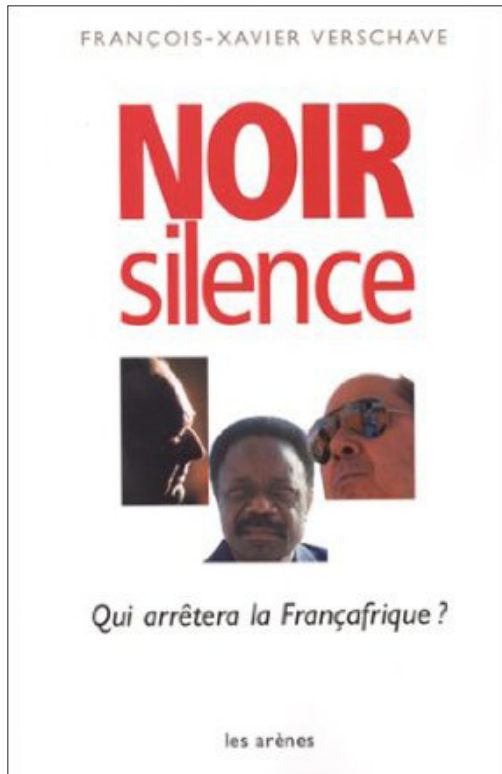
8) CEDH, 22 novembre 1995, *C.R. et S.W. c/ Royaume-Uni*.

속에 들어있지는 않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처럼 명료한 규정이 없기에, 국가원수 모독이란 수많은 행위에 대해서 추후 적용 가능한 것, 심지어 그 속에는 정권에 대한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도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가 유럽 법정 차원에서 우선 가시적인 마찰을 빚게 되었다.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프랑스 국내법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다. 2000년 아프리카의 독재자들⁹⁾의 실태, 그리고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은밀한 지원 정책을 고발한 《침묵의 검은 대륙(Noir silence)》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책의 저자인 시민운동가 프랑소와 자비에 베르샤브(François Xavier-Verschave)에게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를 적용하여 그를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 소송에 대하여 파리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정적으로 2001년 모로코 국왕에 대한 <르몽드>의 만평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법정의 판결(arrêt COLOMBANI c/ France)은 이 조항이 언론법 제36조에 명시된 ‘언론 자유의 위배’의 6가지 예외조항의 하나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럽법정은 2002년 6월 25일자 판결을 통해, 언론사가 외국 국가원수에 예의를 갖출 도의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항상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유럽 법정은 이 사건이 과연 외국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중상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¹⁰⁾

따라서 판결은 공식적으로 언론사의 승소로 끝났고, 또 프랑스 정부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의 삭제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그 결과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2004년 3월 9일자 법률



2000년,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의 실태 및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은밀한 지원 정책을 고발한 시민운동가 프랑소와 자비에 베르샤브(François Xavier-Verschave)의 저서<침묵의 검은 대륙 (Noir silence)> 표지

9) 이드리스 데비(Idriss Déby) 차드 대통령(1990~재임 중), 드니 은구에소(Denis Sassou Nguesso) 콩고 대통령(1979~1992, 1997~재임 중), 오마르 봉고(Omar Bong) 가봉 대통령(1967~2009 재임, 2009년 사망)을 말한다.

10) CEDH, arrêt du 25 juin 2002, Colombani et autres c/ France.

(loi Perben II du 9 mars 2004) 제52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언론법 속에서 삭제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보여준 이러한 입장은 결국 에온/프랑스 정부 소송으로 이어져,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의 최종 폐지라는 결과를 빚어내었다. 2013년 3월 14일에 내려진 판결¹¹⁾은 일단 프랑스 법정의 유죄 판결이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판결은 국가원수 모독죄의 적용을 대단히 좁은 범위로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오직 대통령의 사생활 및 개인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2013년 5월 15일에 지난 130년 동안 언론법 속에 유지됐던 국가원수 모독죄에 대한 처벌 조항의 수정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수정 방향은 결국 해당 처벌 조항의 삭제로 의견이 모였고, 마침내 2013년 8월 5일자 법률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마치며

이상의 내용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법적으로 규정되었던 (국내외)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적용의 법적 근거, 역사적·정치적 맥락, 그리고 최종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판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논의 자체는 물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국내의 현실과는 많은 상이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 대한 논의가 국가원수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한 논의를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1) CEDH, arrêt du 14 mars 2013, Eon c/ France.